

난자 제공에 관한 독일의 입장

신 동 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5월

난자 제공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생명 공학이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인간 생식 세포를 이용한 연구와 새로운 치료술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인간 생식 세포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독일의 생물학과 생명 공학 분야는 매우 진보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독일은 인간 생식 세포 이용과 체세포 복제 같은 윤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명 공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정하는 인간 난자 이용에 대한 독일법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난자 제공 자체를 법으로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난자 채취나 수정란 발생 자체가 임신 목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생명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수정란(배아)의 냉동 보관도 독일에서는 잔여 배아가 남지 않도록 배아보호법에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여지가 희박하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입장은,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인간 존엄성 존중 원칙에 따라 제정된 배아보호법 등의 제반 법률 구조로 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법률 규정으로만 인간 생식 세포 보호를 제도화하였다고 보다는 오히려 독일 사회의 기본적인 생명 존중 사상이 법률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난자와 같은 인간 생식 세포 역시 살아 있는 인간 개체와 유사하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머리글

독일의 난자 제공 관련 법체계나 규범은 형식면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법체계와 규범의 실질적인 배경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 지난 수년에 걸친 논의 결과가 현재 독일의 난자 및 생식 세포에 관한 법규범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단순히 독일 법률의 문구가 아니라 그 법률에 내재하고 있는 규범 구조이다.

2. 이해를 위한 설명

생명윤리는 인간 생명을 비롯한 모든 생명과 생애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생명윤리 논의는 인간 생식 세포와 배아 같은 세부 단편 사항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한 유전 정보 등의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 난자 제공

난자 제공(Eizellspende)이란, 여성의 자연 배란 주기에 인위적인 가공을 하여 난자를 채취한 후 특정한 목적에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난자 제공의 주요 목적은 인공 체외 수정이며, 다른 이유로는 수정된 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 세포 채취나 특별한 실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난자 제공 행위는, 생명윤리 면에서 보면, 인간의 생식 세포를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엄밀히 말해서 난자에는 배아나 수정란처럼 인간

으로서의 잠재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난자를 단순한 세포질로 이해하여 인간 정자를 처리하듯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 법상으로도 난자 제공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인들의 의식은 인간 난자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 배아보호법에 관한 논의가 한창일 때, 난자와 정자 같은 인간의 생식 세포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존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자발적인 난자 채취나 기증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지만, 난자는 오직 임신 목적으로만 획득할 수 있도록 배아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의 난자 제공이나 실험 목적의 난자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위한 특별 예외가 있지만, 이것은 연구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배아 줄기세포에 국한되는 것이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어서 특별히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 당연히 대리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2) 규범 구조

독일 헌법의 규범 구조는 생명윤리의 입장에서 유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것이 독일 헌법 제1조의 규범 구조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보호하는 것이 독일의 제1차적인 헌법적 명령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은 모든 인간의 생명권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둘째는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들의 규범 구조이다. 먼저 1990년 발효된 ‘배아보호법’(EschG od. Embryonenschutzgesetz)은 인간 생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작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연구 기금 관련 법제나 연구 관련 법률들은 인간 생명을

다루는 모든 경우에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독일인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다. 다소 주관적이긴 하나, 이 관점은 독일 법규범의 실질적인 배경을 이루는 요소이다. 이러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법규범으로 지속되고, 법률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별 문제들

난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나 의료 기술은 대체로 체외 인공 수정, 난자 제공, 잔여 배아의 냉동 보관, 대리모, 클로닝 등이 있다.

먼저, 체외 인공 수정 행위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고, 여성의 난자를 체외로 추출하여 시험관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미세 조정술을 이용해서 난포에 직접 정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정자를 난자 세포 내부로 주입시키는 기술이 포함된다.

둘째로 난자 제공은 불임 원인이 여성 난자에 있는 경우, 다른 여성 난자를 이용하여 체외 수정을 하는 방법이다. 다른 여성의 난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독일은 이것을 배아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셋째는 잔여 배아의 냉동 보관이다. 일반적으로 인공 수정을 인정하게 되면, 여성 자궁에 과배란 촉진 호르몬을 주입하여 1회에 정상적으로 배란되는 난자보다 훨씬 많은 난자를 생성시키고, 그것을 체외에서 수정을 시킨 후 2~3개 수정란을 모체에 주입한다. 이 기술에서 주입되지 못한 나머지 수정란(잔여 배아)들은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이에 대한 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냉동 보관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아와 관련된 세부 규칙에서는 체외 수정 기술을 위한 한시적인 냉동 보관만을 허용하고, 과배란 촉진으로 생성할 수 있는 잔여 배아수를 제한하여 현실적으로는 냉동 보관 행위 역시 제한하고 있다. 배아보호법상 독일에서 체외 수정을 하는 경우 한 번에 3개의 난자만을 생성할 수 있고, 한 번 생성되어 수정에 기여한 난자는 모두 1회 기술에서 모체에 주입되어야 한다.

넷째는 매우 민감한 윤리적인 문제이다. 대리모는 독일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가 법으로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모란, 자궁에 문제가 있는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한 후 정상적인 자궁을 가진 여성에게 임신시키는 방법과 난자 세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타인의 난자 세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자궁에 임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리모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어느 국가나 은밀히 존재한다. 불임이라는 현상이 점차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리모 계약까지 개인의 자율권에 맡기는 경향이 많아졌다. 어떤 면에서 대리모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즉 부정적인 생명 인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희망하는 절박함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어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리모를 금지하는 것은 생명 경시 사상 때문만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로닝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 ‘인간 복제’라는 표제로 더 잘 알려진 클로닝은 독일법상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사실 복제 행위를

표.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생명윤리 관련 입장 비교

	체외 수정	난자(배아) 제공	냉동 보관	대리모	클로닝
덴마크	허용	허용	허용	금지	법률 없음
프랑스	허용	허용	허용	금지	금지
영국	허용	허용	허용	허용	금지
네덜란드	실무 해결	실무 해결	실무 해결	실무 해결	금지
노르웨이	허용	금지	허용	법률 없음	법률 없음
오스트리아	허용	금지	허용	금지	법률 없음
스웨덴	허용	허용	허용	금지	금지
스위스	허용	금지	허용	금지	금지
스페인	허용	허용	허용	법률 없음	금지
독일	허용	금지	허용	금지	금지

출처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Freiburg, im Auftrag des Stern.

대리모와 유사하게 인간의 생식 세포를 조작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클로닝을 새로운 인간 생명을 생성시키기 위한 과학적 노력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복제 행위는 대리모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모와 마찬가지로 인간 복제 행위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금지될 수 있다.

4. 논의되는 관점들

난자 제공이라는 ‘행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행위’는 인구학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관념과 철학적인 존재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

1) 재생산

여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꾸준히 ‘재생산’의 주체이자 도구로 구조화되고 있다.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근거임에는 틀림없지만, 남성들의 재생산 과정 개입과 달리 여성의 재생산 활동은 직접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호의적’ 또는 ‘비자발적’이다. 인구학적,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재생산 활동에는 다소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특징이 있다. ‘재생산의 강요’란 단순히 독일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몸을 통한 재생산 순환 고리는 1960년대 여성주의 운동의 관점에 따라 서서히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낙태 자유화’라는 구호로 등장한 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여성의 사회적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고양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다.

독일 사회에서 낙태 관련 논의는 특별한 긴장 관계에서 진행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생존권을 주장하여 태아의 생물학적 생존권을 예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낙태 자유화는 독일 사회에 상당한 문제 의식을 불러왔다. 독일은 처음에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다(소위 Indikation-Modell). 그러나 이 입장은 곧이어 나온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조정되었다. 위헌 결정의 주요 근거는 독일 헌법 제1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보장 규정에는 태아는 물론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계의 생명이 그 대상이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이었다. 즉, 독일 헌법은 수정란도 인간 존엄성의 주체로 이해한다는 결정이다.

2) 자율성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다. 근대 이후 독일의 주요한 사회적 관점은 자기 결정권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엄밀히 말해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은 자율성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다. 반면, 태아와 배아의 생명권은 자율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자율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자 제공과 관련한 모든 법제도와 독일인의 인식에는 두 가지 철학적인 중심축이 형성되어 있다.

칸트(I. Kant)의 일반화된 공식인 “수단화 금지 공식”은 독일 철학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근대 사상의 핵심이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학과 법철학에서는 수단화 금지 공식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다. 근대 사상의 정신적 기반이 된 이 유명한 공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현상인 생명 공학에도 그 위력을 잃지

않는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도구화 또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원칙 만큼 생명윤리의 기본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 반면에, 칸트의 200여 년 전 사상에는 수단화 금지 공식과 또 다른 축이 있었다. 바로 자율성에 앞서는 ‘객관적 준칙’에 대한 생각이다.

3) ‘객관적 준칙’

칸트의 사고는 대다수 독일인 의식의 반영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칸트의 또 다른 주장인 객관적 준칙은 선험적(a priori)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이성적 준칙에 앞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칸트에게 자율성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의 자율성은 객관적 준칙을 엄격히 따르는 자율성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의 법칙에 내재적인 제한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인의 사회 인식은 칸트가 설명하는 객관적 준칙을 따르는 범위 안에서의 자율성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낙태의 권리나 난자 제공 행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독일인들은 객관적 사회 규범의 한계 안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낙태의 권리가 사회 생존권의 일부이나,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인정될 수는 없다. 또한 난자 제공 행위를 개인의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여성의 생식 세포에 대한 독일인의 객관적 규범에 반한다면 개인의 선택이 물러서야 한다. 칸트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사회의 객관적 규범을 구분하면서 개인의 판단은 사회적 규범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4) 작은 결론

위와 같은 논리로 보면, 낙태나 난자 제공, 대리모와 같은 복잡한 생명윤리 사안들은 개인 간의 합의나 대화로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의 범위를 초월하여 제3자 또는 다른 생명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정당한 결정은 구조적이고 가치 있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낙태의 선택권 문제로는 연구 목적의 난자 제공과 클로닝이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자율성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박한 자율성 원리에서 접근하면, 난자 제공이나 대리모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자율적인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떤 강요도 없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였으며, 금전적 대가나 보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난자 제공이나 대리모 계약이 왜 불법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생명윤리 규범을 갖고 있는 근거는 독일 헌법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독일인들의 '사회 인식'이다.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독일의 규범이다.

5. 규범에 대한 설명

전반적인 난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1990년에 입법된 배아보호법(ESchG)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형법과 기타 법률들이 난자 제공에 관한 인간 생식자 보호와 관계가 있다.

1) 과정과 절차

독일은 1962년 형법 초안으로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AID)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당시 형법의 자유화 운동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이미 나치스 시대의 '우생보호법'(1933-35)에 근거한 불임 수술을 시행하여 국제적으로 비난받은 바 있는 독일은 이때부터 유전 공학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식 의학과 유전자 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1984년 7월, 연방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 이듬해인 1985년 9월 연방과학기술부와 연방법무부가 공동검토위원회(Benda Kommission)를 설치하여 연방의회에 유전자 공학과 불임시술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85년 11월 25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제외 수정의 경우 불임시술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고도의 연구 목적을 위한 인간 배아 실험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대리모도 금지하나 유전학상의 모(엄마)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배아를 회태할 수 없는 경우 특례로 근친자를 대리모로 할 수 있다는 권고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1990년 제정된 배아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와 반대로 매우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배아보호법(EschG)은 1990년 12월 13일 인간 복제와 배아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법률이다(BGBl. I, 2746). 이 법률은 당시 사회적으로 생명 복제가 문제되는 시점에 제정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2) 법률

a) 배아보호법

배아보호법 제1조는 인공 수정 기술의 남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인간 배아에 대한 부당한 처우 금지(제2조), 성별 선택의 금지(제3조),

인간 배아 간 세포에 대한 인위적 조작의 금지(제5조), 모든 종류의 클로닝 금지(제6조), 키메라와 잡종물 금지(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종류의 클로닝을 금지하며, 이 법률에 따라 인간 복제는 물론 유전자 치료술, 배아의 유전자 교정 등 일체의 생명 공학적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아보호법은 배아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특별한 지위의 배아를 인간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유전자 치료술로 회복 가능한 환자 개개인의 건강권과 갈등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치료술을 금지하고 있는 제5조는 장래에 유전병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기술을 처음부터 시도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독일에서는 임신 목적이 아닌 난자 제공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배아보호법은 독일에서 난자 제공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취급 하는 근거이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1990년 보다 앞선 시점에서 과학 기술을 평가하고 있다. 당시에는 아직 체세포 치환을 이용한 클로닝 기법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유전자 치료술의 가능성도 지금 처럼 뚜렷하지 못한 시기였다. 배아보호법은 이와 같은 다양한 생명 공학의 발전과 가능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독일 사회의 역사적 특성 때문에 배아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을 어떤 선에서든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독일 사회 일각에서도 배아보호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예견하기 힘들다.

b) 인간줄기세포수입과이용에관한법률

2002년 6월 28일 제정, 공포된 인간줄기세포수입과이용에관한법률(StGZ)은 배아보호법이 심한 규제

로 인해 독일의 생명 공학 발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일련의 비판이 있는 후 제정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법률의 제정으로 독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기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준수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물론 뒷부분에 “연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문언이 있지만 이는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문언으로 이해된다. 제1조 제1항에서는 “근본적으로 줄기세포의 수입과 이용은 금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 대상국에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생성되어 냉동 보관 중인 배아 줄기세포일 것(제4조 제2항 제1호 a),

ii) 처음부터 ① 의료적인 방법으로 ② 임신의 목적으로 체외 수정된 것(부수적으로 그 목적의 미달성이 배아 자체의 문제가 아닐 것도 요구)(제4조 제2항 제1호 b),

iii) 줄기세포의 획득에 금전적인 댓가가 지불되지 않았을 것 등이 요구된다(제4조 제2항 제2호 c).

이 법률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이용과 활용에 대해 독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2002년 이전에 정상적으로 수입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한 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만든 법률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로 난자 제공 등의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난자 제공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배아는 오직 독일 외부에서 생성된 것만으로 한정시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c) 유전공학법

독일의 배아 관련 법제에서 눈여겨 볼 법률들은 10여 년에 걸친 논쟁의 산물이다. 1978년 최초로 그 필요성이 역설되어 초안이 제출되었지만 입법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1984년 독일 연방의회 앙케트위원회(Enquete-Kommission)가 3년의 조사와 연구로 “유전공학을 위한 법적인 규율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1990년 5월에 ‘유전공학규율을위한법률’(GenTG)을 제정하였다. 현행 법률은 1993년에 일부 수정되었다.

이 법률에도 난자 제공에 관한 특별 규정은 없다. 여기서 규정하는 주요 대상은 유전 공학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유전공학육성법’과 달리 독일의 유전공학법은 유전 공학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법이 아니라 유전 공학의 가능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이다.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책임 추정 규정이다(제34조). 이 조항은 원인 제공자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무과실 책임의 인정 여부와 입증 책임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다. 1989년 정부의 초안에서는 책임 배제 사유에서 ‘불가항력’을 삽입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유전공학법에서는 이 문구를 삭제하였다. 결국 이 법에 따르면 제조물

하자에 관한 무한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배아와 관련된 유전자 조작(주로 배아 줄기세포 치료술)의 책임을 모두 시술자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독일이 제한적으로 유전자 조작이나 배아 줄기세포 치료술을 허용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다시 이중의 잠금 장치를 갖는 효과가 있다.

6. 마치며

배아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구조로 인하여 난자 등의 인간 생식 세포의 취급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독일의 생명윤리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이 오래도록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하여 독일의 법적 상황이 지나치게 규제적이라는 사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기술이나 인간 생식 세포에 관련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독일의 새로운 골칫거리이다.

다만, 독일이 인간 배아, 난자 제공 등에 대한 개별적인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론에 이르는 구조는 역시 같을 것이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6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